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94 호 2023. 4. 6.(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66회[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68회[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69회[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98회[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12회[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3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2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4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4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5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5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6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7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66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임성혜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로 309-20, 109동 605호 (협성노블리스)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밴드 공연	점용 면적	○ 일시 33.0㎡
점용 기간	○ 2023. 4. 9. (1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68호

##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농수산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31-4번지	하천의 명칭	상안천
점용 내용	공사용 가도 설치 (L=30m, B=6m, 파형강관Ø1000×9분)	점용 면적	180m <sup>2</sup>
점용 기간	2023. 4. 5. ~ 2023. 5.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6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6(2020. 1. 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호선별 면적정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3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3-73호선, 중3-94호선)사업
  - 나. 명 칭 :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가. 도로(중3-73)개설 : L=330.1m B=12m
  - 나. 도로(중3-94)개설 : L=172.5m B=12m

구분	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			총면적(m <sup>2</sup> )
	길이(m)	폭(m)	면적(m <sup>2</sup> )	길이(m)	폭(m)	면적(m <sup>2</sup> )	
도로(당초)	330.1	12	3,961	172.5	12	2,361	6,299
도로(변경)	330.1	12	3,996	172.5	12	2,303	6,29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18. 8. ~ 2021. 6. 30.

나. 변 경 : 2018. 8. ~ 2024.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사업계획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변경협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착공 전 본 허가구역 내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허가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타 법령 이행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인·허가·승인 등 개별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해소 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와 신규 개설되는 도로는 단절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게 준공 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붙임】의 부서(기관)별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 준공검사(협의) 하여야 합니다.

## 붙임 부서(기관)별 협의의견

### □ 울산광역시 교육청 협의의견

- 편입예정지(연암동 1151번지, 397㎡)는 유상 매각(손실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1항에 따라 동 부지 편입 후 가치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분할 후 발생하는 잔여지 전부 매수 요청
- 학교 주변 공사 진행 시 학교 교육과정에 방해가 없도록 소음 및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 복구 문화체육과 협의의견

- 지정문화재 : 해당없음
- 매장문화재 : 본 사업대상지는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울산 연암동 유적 및 울산 연암동 제이송정초등학교부지)이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매장문화재 협의를 위한 구비서류를 이메일로(x2qmffor@korea.kr) 또는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시기 바람
- ※ 구비서류 : 위치도, 현장사진, 사업계획서, 배치도, 용지도(JPG 또는 PDF파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과에 제출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 □ 복구 건설과 협의의견

- 편입대상 국유지(연암동 1331-18번지, 1331-19번지, 1318-7번지, 1348번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유상매입하시기 바랍니다.

### □ 복구 농수산과 협의의견

- 연암동 1132번지 외 17필지는 기 농지전용 협의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농지로 농지전용 협의 대상이 아니며 농지법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 마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부담금 100% 감면 대상임
-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으로 별도의견 없음

□ 복구 자원순환과 협의사항

관련 법	검토결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기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 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이상의 <b>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b> ※ 또한,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환경부 고시 제2014 - 33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 - 105호 및 <b>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순환폐기물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폐기물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함</b>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건설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및 별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기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5항	○ 공사기간 내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월 평균 50kg이상의 폐유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 오일교환 등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차량정비소에서 정비할 경우는 제외 ※ <b>페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건설폐기물 철거 작업 시는 별도 신고 하여야 함</b>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항	○ 기존 “지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시행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 처분 부담금)	○ 사업장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b>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분</b> 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으로 <b>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b> 1. 정기신고- 계속사업장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 (2019년 최초 신고 대상) 2. 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 중 해당 폐기물 종료된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한국환경공단에 신고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노선별 면적(㎡) 당초		노선별 면적(㎡)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중3-73	중3-94	중3-73	중3-94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구례	애미면	1130-4	도	749	286	286	286		울산광역시 북구						
2	구례	애미면	1132	답	264	264	264	264		울산광역시 북구						
3	구례	애미면	1133	답	199	199	199	199		울산광역시 북구						
4	구례	애미면	1115-7	답	540	540	480	60	480	60	울산광역시 북구					
5	구례	애미면	1331-1 8	도	122	122	42	80	42	80	국(건설부)					
6	구례	애미면	1134-3	답	696	696	207	489	207	489	울산광역시 북구					
7	구례	애미면	1118-3	답	331	331		331		331	울산광역시 북구					
8	구례	애미면	1331-1 9	도	63	63		63		63	국(건설부)					
9	구례	애미면	1318-7	천	111	111		111		111	국(건설부)					
10	구례	애미면	1107-1	답	144	144		144		144	울산광역시 북구					
11	구례	애미면	1106	천	217	217		217		217	울산광역시 북구					
12	구례	애미면	1348	도	123	123		123		123	국(건설부)					

13	구제	애묘묘	1104	전	270	270		270		270	울산광역시 북구				
14	구제	애묘묘	1084	답	34	34		34		34	울산광역시 북구				
15	구제	애묘묘	1088-8	답	337	337		337		337	울산광역시 북구				
16	구제	애묘묘	1085	답	44	44		44		44	울산광역시 북구				
17	구제	애묘묘	1113-5	답	327	92		92	92		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덕현1길 **	울산 시예 민합 조합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덕현1길 26	근저 당권
18	구제	애묘묘	1151	전	488	397	397		397		울산광역시 (교육감)				
19	구제	애묘묘	1150	전	65	65	65		65		박*순	울산지 중구 동동 ***			
20	구제	애묘묘	1167-1	전	1,205	731	731		731		김*득	울산시 북구 화봉동 ****_**	병영 민합 조합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근저 당권
21	구제	애묘묘										병영 민합 조합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지상 권	
22	구제	애묘묘	1166-4	전	1,155	392	392		392		윤*환	울산지 북구 화동로 **_**(화봉동)	중산 민합 조합	울산시 중구 변영로 564(남외동)	근저 당권

23	구계	아이오이오	1159-1	답	1,082	745	745		745		유*영	울산시 중구 함월로 14, ***호(성안동, 섬모빌라트)	농협 은행 주식 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권	자 분 /2	
24	구계	아이오이오									정*옥	울산시 중구 함월로 14, ***호(성안동, 섬모빌라트)					자 분 /2
25	구계	아이오이오	1160-6	전	405	96	96		96		정*조	울산 북구 명촌동 토지구획정리지구 126블럭 1롯데 평창리비에르1차아 파트***동***호					
26																	
합 계					8,971	6,299	3,904	2,395	3,996	2,303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498호

# 울산광역시 복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띄워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외 조항 신설

(안 제2조제3항제3호)

나. 그 밖에 법령 띄워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 3.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세무2과

2) 전화번호 : 052)241-8541, 팩스번호 : 052)241-7519

3) 전자우편(E-mail) : you33@korea.kr

#### 6.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복구”를 “울산광역시 복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수령자가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신설>

제3조(지급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6조의2(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정한

----

1. ~ 2. (현행과 같음)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람-----.

제6조의2(지급신청) ① -----

----- 사람은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 제6조의2--

-----  
-----  
-----  
----- 해당 연도  
----- 다음 연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령자가 금융기관-----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  
 -----  
 -----.

제8조(환수) ① (생략)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행정착오로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의 내부규정

②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512호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요청기관	제공일자	법적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	'23. 1. 17.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022개 회68302 개인회생」 관련 사실조회	조회대상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및 토지소유현황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	'23. 2. 17.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 「가사소송법」 제8조	「2022드 함2442 이혼」 관련 사실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제주지방법원)]	'23. 2. 20.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2022하 단21 파산선고」 관련 사실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	'23. 3. 6.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2022하 단5316 파산선고」 관련 사실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23. 3. 1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과년도 세외수입 채납자에 대한 채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춘천지방법원)]	'23. 3. 28.	- 「민사소송법」 제347조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2022하단1025 파산선고」 관련 사실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	'23. 4. 3.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2022하단5333 파산선고」 관련 사실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청[건축주택과]	'23. 4. 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86조 - 「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제6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3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의석배정 순서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통일(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 다. 후보자 등록 대상에 의원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 신설(안 제8조제6항)
- 라.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마.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 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 사. 본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현행에 맞게 삭제(안 제28조제1항)

- 아. 표결 방법에 거수·기립 추가(안 제46조제1항)
- 자. 예산안 심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69조제1항)
- 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변경 방법 변경(안 제69조제5항)
- 카. 예산안 수정동의 방법 변경(안 제70조)
- 타. 징계 요구 시 본회의 부의시한 삭제(안 제92조제1항)
- 파. 기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박정환·김정희·이선경

박재완·조문경·김상태

강진희·손옥선·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 1. 개정이유

- 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의석배정 순서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통일(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 다. 후보자 등록 대상에 의원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 신설(안 제8조제6항)
- 라.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마.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 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 사. 본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현행에 맞게 삭제(안 제28조제1항)
- 아. 표결 방법에 거수·기립 추가(안 제46조제1항)
- 자. 예산안 심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69조제1항)
- 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변경 방법 변경(안 제69조제5항)

- 카. 예산안 수정동의 방법 변경(안 제70조)
- 타. 징계 요구 시 본회의 부의시한 삭제(안 제92조제1항)
- 파. 기타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3조
-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다. 입법예고 : 2023. 4. 6. ~ 4. 1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지역구·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의원은”을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으로, “가진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을 “회기 시작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회기 변경
8. 휴회 또는 폐회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8조제1항 본문 중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듣고 질의·토론”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를 “거수·기립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56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아니하는 사람이어야”를 “않는 사람이어야”로, “아니하는 한”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을 “의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을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제70조 중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를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낭독하는”을 “낭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3항 본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9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3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석배정) ① (생 략)</p> <p>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이 <u>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u>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지역구 · 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u> ----- ----- .</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p> <p>② 의원의 청가는 <u>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한다.</u></p> <p>③ (생 략)</p> <p>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u>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 ⑥ (생 략)</p>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의장</u> ----- ----- .</p> <p>&lt;단서 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의장</u> -----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 ⑤ (생 략)</p> <p>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p>	<p>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u>은 ----- ----- ----- <u>가</u></p>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단 신설>

⑦ (생략)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의장·부의장 사임) ① (생략)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④ (생략)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

진다. 이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의원의 임기개시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장·부의장 사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고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  
-----  
----- . -----  
-----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  
-----  
-----  
-----  
----- . -----

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삭 제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예산안 : 10일

2. 조례안 등 일반의안 : 7일

③ (생략)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② (생략)

③ 의장은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생략)

<신설>

-----  
----- 않  
고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② -----  
-----  
----- 회기 시작 10일 -----  
-----  
-----.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그렇지 않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 2. 위원 선임
-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  
장 사임 동의
-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  
가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7. 회기 변경
- 8. 휴회 또는 폐회
-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  
에 관한 이의신청
-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  
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  
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안건

②·③ (생략)

④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 않는다.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28조(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생략)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

-----

----- 않은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안건 심의) ① -----

-----

----- 듣고 질의·토론-----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은 -----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발언의 계속) -----

-----

----- 않으며-----

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 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  
-----  
-----  
-----.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  
-----  
-----  
- 안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  
-----  
-----.  
-----  
-----  
----- 그  
렇지 않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  
-- 범위-----  
-----.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  
-----  
----- 않는 -----  
-----  
-----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6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삭제

③ (생략)

④ 삭제

제47조(투표 절차) ①·② (생략)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않고  
-----.

제44조(표결의 참가) -----  
----- 않은 -----  
-----.

제46조(표결 방법) ① -----  
-- 거수·기립 또는 전자투표--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투표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략)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않고 -----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  
-----  
않는다.

② -----  
- 않은 -----  
-----  
-----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  
-----  
----- 안 -----.

④ ----- 않은 -----  
----- 안 된다. -----  
-----  
-----  
-----.

⑤ (생 략)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② (생 략)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⑥ (생 략)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 않으며 -----  
-----  
--.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으며 -----  
-----.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않는 사람이어야 -----  
----- 않으면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  
-----  
-----  
-----  
----- 그렇지 않다.

② (생 략)

제64조(공청회) ①·② (생 략)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청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안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안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  
----- 의장 -----  
-----  
-----  
-----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예결위원회 -----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④ (생략)

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내 예결위원회에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생략)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  
----- . --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  
-----.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  
-----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않은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  
-----

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 하는 행위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 4. ~ 6. (생략)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 4. (생략)
- ②·③ (생략)

제89조(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안 -----.

- 1. (현행과 같음)
- 2. -----  
-----  
----- 낭독하는 -----
- 3. ----- 않은 -----  
-----
- 4. ~ 6.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  
----- 사람에  
대해서는 ----- 않는다.

- 1. ~ 4.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녹음·녹화등) ① -----  
----- 않기로 -----  
-----  
-----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회의장 -----  
-----
- .
- ④ -----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② (생략)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 삭제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 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

-----  
안 -----.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안 된다. -----  
-----  
----- 그러하지 않다.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않으며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 -----  
-----  
-----  
-----  
-----  
-----  
-----

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생략)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의사의 비공개) -----  
----- 않는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나.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김상태·김정희·이선경  
                   박정환·박재완·조문경  
                   강진희·손옥선·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 1.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 나.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다. 입법예고 : 2023. 4. 6. ~ 4. 1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자치위원회</p> <p>가. <u>기획조정실</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 마. (생략)</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u>기획재정국</u> -----</p> <p>---</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u>임기개시</u>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p> <p>-----.</p> <p>-----</p> <p>----- <u>의</u></p> <p><u>원의 임기개시</u>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나.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마.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바.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사.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박재완 · 김정희 · 이선경  
 박정환 · 조문경 · 김상태  
 강진희 · 손옥선 · 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나.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마.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바.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사.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 다. 입법예고 : 2023. 4. 6. ~ 4. 1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심의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지원
5.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기타 전문가집단 등으

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에게 통지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과업내용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

**제13조(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심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

사무과에서 지급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대표는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단체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성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표 회원 회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의원연구활동 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약	
연구활동비	원
기타사항	

※ 의원연구활동 세부계획서(비용산출·집행계획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년 월 일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 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	총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연구단체명 : ○○○○ 연구단체 대표 ○○○

용역개요

- 용역명 :
- 용역기간 :
- 용역비 :

필요성

- 
- 

과업내용

- 
- 
- 

용역결과 활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향후 추진계획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연구단체명		
용역 내용	용역과제	
	용역목적	
용역 내용 및 추진계획		
용역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별 첨 :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물 활용계획		

※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

년 월 일

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인)	
변경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 정책연구용역 변경 내역서 첨부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정책연구용역 심사결과 통보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귀 단체의            년도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음  
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과제명	
심사·의결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결과 요약		
연구 활동 비	지원액	원
	집행액	원
	잔액	원
기타사항		

※ 연구결과 세부내용(비용 세부집행내역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3 - 6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 나.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 의사주무관 → 의정주무관(안 제6조제2항)
-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손옥선 · 김정희 · 이선경

박정환 · 박재완 · 조문경

김상태 · 강진희 · 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 나.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 의사주무관 → 의정주무관(안 제6조제2항)
-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나. 입법예고 : 2023. 4. 6. ~ 4. 1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주무관”을 “의정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④ (생 략)</p> <p>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생 략)</p> <p>제6조(회의) ① (생 략)</p> <p>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이 된다.</p> <p>③ (생 략)</p>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u>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제5항----- ----- -----.</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의정주무관</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u>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1. ~ 4. (생 략)</p> <p>② (생 략)</p>	<p>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p> <p><u>&lt;후단 삭제&gt;</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